

(제 정) 2021. 11. 18.
(일부개정) 2024. 01. 29.

동해시민장학재단
운 영 세 칙

재단법인 동해시민장학재단

재단법인 동해시민장학재단 운영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재단법인 동해시민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정관 제39조에 의거 정관 시행에 관한 사항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 등 본 재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의 운영)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기탁금 등 기타의 수입)의 과실금(이자수입)으로 운영한다.

제3조(목적사업 등) ① 목적사업은 동해시 출신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23. 6. 28.>

② 장학사업의 재원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과실금(이자수입) 및 기부금,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제4조(재산의 증식) ① 기본재산은 재단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증식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학금 확대 조성으로 재산변동 시에는 보통재산으로 관리하고, 회계연도 결산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한다. <개정 2023. 6. 28.>

③ 제2항의 경우 정관 제39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

제 2 장 이사회 운영

제5조(회기 등) ① 이사회는 정관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② 정기총회 개최 시기는 당해연도 장학사업 수행, 재단의 예산, 결산 등 시기를 고려하여 이사장이 결정한다.

③ 기타 본 재단 운영상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과 정관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 개최한다.

제6조(이사회 소집 등) 이사회 소집 통보 등 제반 사항은 본 재단 사무국장이 이사장을 보좌하여 관장한다.

제 3 장 사무국 운영

제7조(설치장소) 사무국은 동해시청 소관부서 사무실을 겸용한다. 단, 필요시
는 시청 내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9.>

제8조(상근 임직원) ① 사무국 상근 임직원은 사무국장 1인과 사무국팀장 1
인, 기타 사무국 직원 1인 등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6. 28.>
② 사무국장은 소관부서과장이 겸임, 사무국직원은 소관부서 직원이 겸임
한다. <개정 2024. 1. 29.>

제9조(기능) 사무국의 기능은 본 재단 정관 제34조에 정한 실무 외에 이사회
소집 통보, 법인명의 문서발간 및 보존관리, 법인공인관리 등 법인 운영에
관한 제반 실무를 집행한다.

제10조(법인의 문서관리 등) 본 재단에서 발간하는 문서 관리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류기호 : 시민장학 제 ○ 호
2. 보존기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준용
3. 문서의 접수 및 발송 등 기타 - 문서관리에 대한 절차는 「행정 효율과 협
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4. 전결사항 : 장학금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하여 장학금
수입, 지출 등 회계 관련 사항과 일반문서 접수, 발송 등 일반사무에 관한 사
항은 사무국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 4 장 장학금 지급

제11조(장학생의 선정기준) ① 장학생은 동해시 관내 소재 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과 대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 중에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② 삭제 <개정 2023. 6. 28.>

③ 제1항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하며, “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학점은행제, 사이버(원격)대학, 방송통신대학 재학생은 제외한다.

제12조(장학생의 자격)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6. 28.>

1. 고등학생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 또는 동해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대학생(전문대 포함)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갖춘 자

제13조(추천 및 신청) ①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학교장이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매 학년마다 학교별 배정된 범위 내에서 선정 후, 이사장에게 추천한다.

② 대학생(전문대생 포함)의 경우,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소정의 신청서류를 갖추어 직접(또는 보호자) 이사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3. 6. 28.>

제14조(심사 및 선발) ①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심사는 이사장에게 제출된 대상 범위 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② 장학생 선발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최종결정한다.

1. 사무국장이 1차 서류심사 후 우선순위를 결정 이사장에게 보고
2. 이사장은 심사된 대상자의 자격 등 적격 여부를 검토 후 이사회에 상정
3. 이사회 심의 및 의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기준은 다음

과 같다. <개정 2023. 6. 28.>

1. 동일 세대에 지급대상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1인만 지급(대학생에 한함) <개정 2023. 6. 28.>
2. 대학생과 고등학생 간의 선발인원 비율은 장학금 지급액 대비 7:3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조정 가능
3.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별 재적 학생수에 비례하여 학교별로 선발인원 안배
4. 예·체능분야 선발인원 비율은 장학생 수 대비 10%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조정 가능

제15조(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액)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과실금(이자수입) 및 기부금, 출연금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16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생활비지원 장학금으로 지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학기별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휴학·일반휴학 등의 제17조제2호의 사유로 장학금 지급을 연기한 자의 지급기간은 군휴학의 경우 3년, 일반휴학의 경우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②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은 개인별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제17조(장학금 지급의 중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을 때
2. 휴학하였을 때(군휴학은 복학하는 경우에 잔여기간 계속 지급)
3. 장학금을 학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4.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을 때
5. 보호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6.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발요건을 결하게 된 때
7.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공고, 통보 등) ①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2월 이내 14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연도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며, 이 선발공고에는 장학생 자격요건,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구비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23. 6. 28.>

② 이사장은 제14조에 의거 심사 후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학교장 및 본인(또는 보호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 6 장 보 칙

제19조(임원의 보수) 정관 제14조에 따른 임원의 보수는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1. 정기총회 등 이사회 운영·심의 수당 : 1일당 7만원(2시간 이상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하여 3만원 추가 지급)
2.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회의 참석 다과·음식물 제공 : 1인당 8천원(회의 직전·직전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 제공을 포함하며, 급량비 기준 단가를 적용함)
3. 출장여비 : 근무지 내 국내출장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하지 아니하며 국외출장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21. 11. 18.>

이 세칙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6. 2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보수지급에 관한 특례) 이 세칙 개정에 따라 제19조의 규정은 2021년 11월 18일 재단 창립총회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보수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